※이 상품요약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무배당 뉴 이 좋은 치아보험 (갱신형)
상 품 요 약 서

이 상품요약서는 무배당 뉴 이 좋은 치아보험 (갱신형)의 보험약관 등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IA – INTERNAL]

◆ 상품의 특이사항

무배당 뉴 이 좋은 치아보험 (갱신형)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1) 용어의 정의

- **"유치"**란, 젖먹이때 나서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 **"영구치"**란, 우니(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다만,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 **"치아우식증(충치)"**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아우식), K04(치수 및 치근단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아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경우 또는 이로 인한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 **"치주질환(잇몸질환)"**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 및 치주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크게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반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됐을 때는 치은(잇몸)염이라 하고, 치은(잇몸)염을 방치해 치주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고 합니다.
- **"충전치료"**란, 치아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 손상된 부위를 원상회복시켜 형태학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를 말하며, 치아에 재료를 직접 수복하는 직접충전과 구강 외에서 수복물을 제거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치아에 수복물을 접착하는 간접충전(인레이, 온레이)이 있습니다.
- **"크라운치료"**란, 치관장착(Crown) 치료를 말하며 치아에 손상이 생겨 삭제량이 많을 경우 또는 신경치료로 인해 치아의 강도가 약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치아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를 말합니다.
- **"치수치료(신경치료)"**란, 치아내부에 있는 치수(혈관이 밀접한 연조직)가 치아우식증(충치)으로 인해 감염되거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해 손상된 경우, 치수를 제거하여 통증이나 기타증상을 없애고 치아가 제자리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 **"영구치 발거"** 또는 **"영구치 발거치료"**란, 의사가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 **"보철치료"**란, "가철성의치(Denture)", "고정성가공의치(Bridge)" 및 "임플란트(Implant)" 치료를 말합니다.
- **"가철성의치(Denture)"**란, 영구치와 그와 연관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로서 국소의치와 총의치를 포함합니다. 국소의치(부분틀니, 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아와 그 관련 조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금관, 지대치 혹은 다른 고정성 가공의치(Bridge) 및 점막에 지지를 받습니다. 총의치(Complete Denture)는 영구치가 하나도 없는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의치를 말하며, 영구치 또는 인공치의 치열 전체, 보통 상실한 영구치와 주위 조직을 대신하는 인공 보철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틀니를 말합니다.
- **"고정성가공의치(Bridge)"**란,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내에 영구접착 되어지는 보철물 치료를 말합니다.
- **"임플란트(Implant)"**란,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 **"치과치료"**란,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 영구치발거치료 및 보철치료를 말합니다.
- **"소액치과치료"**란,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및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말합니다.
-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목적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에서 치주질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무배당 뉴 소액치과치료보장특약 (갱신형) 약관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분류표"(<별표>참조)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⑵ 이 상품은 보험기간 중 각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및 치수치료(신경치료)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로 인한 영구치발거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무배당 뉴 소액치과치료보장특약 (갱신형) 부가 시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치료(스케일링)를 진단 확정 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또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보장합니다.
무배당 뉴 보철치료보장특약 (갱신형) 부가 시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를 보장합니다.
또한, 무배당 뉴 크라운치료보장특약 (갱신형) 및 무배당 뉴 충전치료보장특약 (갱신형) 부가 시 크라운치료 및 충전치료(아말감을 충전치료재료로 사용하였을 경우는 제외)를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⑶ 보장개시일 및 감액기간

[주계약, 무배당 뉴 충전치료보장특약 (갱신형), 무배당 뉴 크라운치료보장특약 (갱신형)]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보장개시일</th><th>감액기간</th></tr>
<tr><td>충전치료급여금</td><td>충전치료
보장개시일</td><td rowspan="4">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td><td rowspan="2">해당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만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td></tr>
<tr><td>크라운치료급여금</td><td>크라운치료
보장개시일</td></tr>
<tr><td>치수치료(신경치료)
급여금</td><td>치수치료
(신경치료)
보장개시일</td><td rowspan="2">없음</td></tr>
<tr><td>영구치발거급여금</td><td>영구치발거
보장개시일</td></tr>
</table>

※ 영구치발거급여금에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감액기간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뉴 보철치료보장특약 (갱신형)]

구분	보장개시일		감액기간
가철성의치(틀니) 급여금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해당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만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급여금			
임플란트급여금			

※ 가철성의치(틀니)급여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급여금 및 임플란트급여금에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감액기간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치료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뉴 소액치과치료보장특약 (갱신형)]

구분	보장개시일		감액기간
치석제거 (스케일링)치료급여금	소액치과치료 보장개시일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없음
주요치주질환 (잇몸질환)치료급여금			

⑷ 다음의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계약, 무배당 뉴 충전치료보장특약 (갱신형), 무배당 뉴 크라운치료보장특약 (갱신형)]

- 해당 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치과치료에 대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또는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해당 충전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해당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 치수치료(신경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해당 치수치료(신경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 영구치발거보장개시일 이전에 영구치 발거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또는 발거한 경우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 이외의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거한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새로운 치주질환(잇몸질환)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

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 치료

[무배당 뉴 보철치료보장특약 (갱신형)]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보철치료에 대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또는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 보철치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보철치료를 한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또는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 치료

[무배당 뉴 소액치과치료보장특약 (갱신형)]

- 해당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소액치과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한 경우
- 치주질환(잇몸질환) 이외의 원인으로 소액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⑸ 다음의 원인으로 인한 영구치 발거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의치보철준비: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가 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치과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 치열교정준비 및 위치이상: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거한 경우
- 맹출(이돋이)장애: 부분매복되거나 완전매복되어 발거한 경우

갱신형 상품이란 무엇인가요?
무배당 뉴 이 좋은 치아보험 (갱신형) 은 보험기간이 15년만기인 상품입니다. 보험기간 만료 후에도 이 계약은 자동 갱신되며,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한 경우 또는 충전치료급여금, 크라운치료급여금, 치수치료(신경치료)급여금 및 영구치발거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의 나이가 80세가 되는 계약해당일까지 갱신되어 유지되는 상품입니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등은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갱신시의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 등)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나요?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가입자격요건

1. 보험종목의 명칭

보험종목의 명칭	보험의 세목
무배당 뉴 이 좋은 치아보험 (갱신형)	순수보장형

2.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 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최초계약	15년만기	전기납	6세~65세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갱신계약	15년만기	전기납	21세~65세	
	14년만기		66세	
	13년만기		67세	
	12년만기		68세	
	11년만기		69세	
	10년만기		70세	
	9년만기		71세	
	8년만기		72세	
	7년만기		73세	
	6년만기		74세	
	5년만기		75세	
	4년만기		76세	
	3년만기		77세	
	2년만기		78세	
	1년만기		79세	

3. 가입한도

주계약의 가입한도(구좌 기준)는 10구좌입니다.
주계약 1구좌는 크라운치료급여금 2만원을 의미합니다.

4. 건강진단 여부

무배당 뉴 이 좋은 치아보험 (갱신형)의 경우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피보험자의 나이, 청약서 상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 주계약: 무배당 뉴 이 좋은 치아보험 (갱신형)
  + 무배당 뉴 보철치료보장특약 (갱신형) [선택특약]
  + 무배당 뉴 소액치과치료보장특약 (갱신형) [선택특약]
  + 무배당 뉴 충전치료보장특약 (갱신형) [선택특약]
  + 무배당 뉴 크라운치료보장특약 (갱신형) [선택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도성특약]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제도성특약]

※ 특약의 경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한도, 부가가능여부 등의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다음은 보험금 지급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⑴ 주계약

(기준: 10구좌)

<table>
<tr><th>지급명칭</th><th>지 급 사 유</th><th colspan="2">지 급 액</th></tr>
<tr><td rowspan="4">충전치료
급여금</td><td rowspan="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충전치료에 대해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치아(유치, 영구치) 1개당 지급함)</td><td>금, 도재(세라믹)</td><td>12만원</td></tr>
<tr><td>아말감</td><td>1만원</td></tr>
<tr><td>금, 도재(세라믹), 아말감 이외</td><td>5만원</td></tr>
<tr><td colspan="2">(다만,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만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td></tr>
<tr><td>크라운치료
급여금</td><td>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치아 1개당 지급하며, 치료치아(유치, 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 한도로 함)</td><td colspan="2">20만원
(다만,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만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td></tr>
<tr><td>치수치료
(신경치료)</td><td>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수치료(신경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td><td colspan="2">2만원</td></tr>
</table>

지급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급여금	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치아(유치, 영구치)1개당 지급함)	
영구치발거 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영구치발거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 한도로 함)	2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되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망 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된 시점의 회사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충전치료보장개시일,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치수치료(신경치료)보장개시일, 영구치발거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 영구치발거급여금에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새로운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중 두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새로운 치주질환(잇몸질환)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⑵ 무배당 뉴 보철치료보장특약 (갱신형)

(기준: 10구좌)

지급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가철성의치 (틀니) 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은 경우 (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	25만원 (다만,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만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합니

지급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도로 함)	다)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25만원 (다만,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만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임플란트 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50만원 (다만,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만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망 또는 영구치가 모두 상실된 시점의 회사가 적립한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보철치료 중 두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또는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 무배당 뉴 소액치과치료보장특약 (갱신형)

(기준: 1구좌)

지급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치료(스케일링)를 진단 확정 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치석제거(스케일	1만원

지급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링)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주요치주질환 (잇몸질환) 치료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은 경우	3만원 (약관 <별표> "주요치주질환 (잇몸질환)치료분류표" 및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인정 기준"에 따라 지급함)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 동일한 잇몸부위에 주된 수술과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수술로 두 가지 이상의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 동시에 1/3악을 초과하여 치료받을 경우,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따라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의 수량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⑷ 무배당 뉴 충전치료보장특약 (갱신형)

(기준: 10구좌)

<table>
<tr><th>지급명칭</th><th>지 급 사 유</th><th colspan="2">지 급 액</th></tr>
<tr><td rowspan="3">충전치료 급여금</td><td rowspan="3">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충전치료에 대해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다만, 아말감을 충전치료재료로 사용하였을 경우는 제외)를 받은 경우 (치료치아(유치, 영구치) 1개당 지급함)</td><td>금, 도재(세라믹)</td><td>12만원</td></tr>
<tr><td>금, 도재(세라믹), 아말감 이외</td><td>3만원</td></tr>
<tr><td colspan="2">(다만,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만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td></tr>
</table>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되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망 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된 시점의 회사가 적립한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충전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 이미 충전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새로운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충전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새로운 치주질환(잇몸질환)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무배당 뉴 크라운치료보장특약 (갱신형)

(기준: 10구좌)

지급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크라운치료 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치아 1개당 지급하며, 치료치아(유치, 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 한도로 함)	20만원 (다만,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만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되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망 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된 시점의 회사가 적립한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새로운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새로운 치주질환(잇몸질환)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6)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예: 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초기 또는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계약은 질병(치매 등)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인식불명 등으로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중 본인을 위한 계약「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경우 보험회사에 대리청구인 지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전환을 청약 할 수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장애인의 범위)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3.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⑴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연체된 보험료 및 갱신 후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이 계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됩니다.
⑵ 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⑶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갱신계약의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등은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갱신시의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 등)을 적용합니다.
⑷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최초계약에 대한 보장금액입니다.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보장금액의 삭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⑸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80세까지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다만, 갱신시점에 가입가능 나이 초과시, 보험기간 중 계약소멸사유 발생시, 갱신전 계약의 연체된 보험료 미납시에는 갱신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⑹ 갱신되는 계약의 변경 내용 또는 갱신되는 계약의 보험료 등을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취)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⑺ 이 계약에 부가된 특약은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4. 일반적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⑴ 계약 전 알릴의무 및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⑵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의사 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 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⑶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⑷ 보험금 부지급 사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AIA – INTERNAL]

◆ 보험료 산출기초 및 적용이율

1.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적용이율이란,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뉴 이 좋은 치아보험 (갱신형)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25% 입니다.

2. 적용위험률에 관한 사항

적용위험률이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크라운보존치료발생률(영구치)	
	남자	여자
20세	0.087535	0.150392
40세	0.189037	0.208907
60세	0.236212	0.274379

구분	충전치료발생률(영구치)	
	남자	여자
20세	0.746622	1.102260
40세	0.517037	0.673364
60세	0.557200	0.598445

구분	영구치상실률	
	남자	여자
20세	0.032639	0.040349
40세	0.152302	0.097663
60세	0.453418	0.337818

3.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AIA – INTERNAL]

◆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배당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것을 말하며, 또 그 종류에는 이자율차배당, 위험률차배당, 사업비차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이 있습니다.

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뉴 이 좋은 치아보험 (갱신형)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우리 AIA생명은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최초계약, 주계약 10구좌, 15년만기, 전기납, 월납 (가입나이 40세, 단위: 원)

구 분 /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42,480	0	0.0%	50,460	0	0.0%
6개월	84,960	0	0.0%	100,920	0	0.0%
9개월	127,440	0	0.0%	151,380	0	0.0%
1년	169,920	0	0.0%	201,840	0	0.0%
2년	339,840	0	0.0%	403,680	0	0.0%
3년	509,760	0	0.0%	605,520	0	0.0%
5년	849,600	0	0.0%	1,009,200	0	0.0%
10년	1,699,200	2,450	0.1%	2,018,400	18,810	0.9%
15년	2,548,800	0	0.0%	3,027,600	0	0.0%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보험가격지수

보험가격지수란?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평균해지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기준: 남자/여자, 40세)

상품명	보험 기간(년)	납입 기간(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만원)
(무)뉴 이 좋은 치아보험 (갱신형)	15년	15년	남자	160.0%	10구좌 [크라운치료급여금 20만원 기준]
			여자	148.1%	